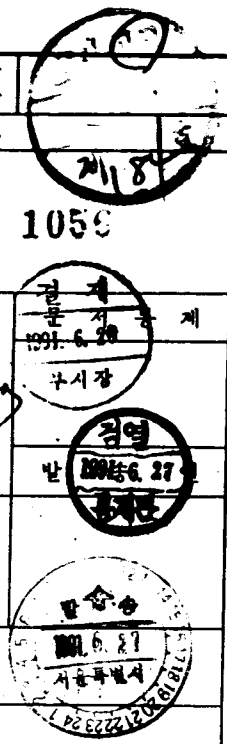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(전화: 731-6353)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개 30320-1177	시행상 특별취급	시 장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1059	
수신처 보존기간		결 론 시 정 제 1991.6.27	
시행일자	1991.6.	부 시 장	
보조 기 관	부시장 전갈	협 조 기 관	법무담당관 주택기 외계심사관 권리장
	도시개발국장		
	도시개발과장		
기안책임자	환지국장 노경찬	검 열 반 1991.6.27	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발 신 명 의	시 장
제 목	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(기간 연기) 인가		
제 1 안 (내부결재)			
제목 동 건			
1. 우리시에서 '91.6. 사업시행안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			
지구중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반포, 압구정아파트 지구내 아파트지구 잔여지 처리대책과 관련			
하여 추진중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승인 지언 및 환지확정측량이 미완료되어 부득			
이 '91.12.31까지 환지확정처분의 연기가 불가피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2조(관계			
서류의공람) 및 제14조(규약 또는 사업계획의변경), 같은 법 시행령 제40(권한의 위임)의			
규정에 의거,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변경(기간연기)인가코자 합니다.			
가. 사업계획변경(기간연기) 내역			



지구명	시영면적	시영사	사업시행기간		비고
			당초	변경	
영동지구	26,764,872.9 5,421,066.69	서울특별시	'68.1.18-	'68.1.18-	6개월 연장
<p>4. 공고개요</p> <p>1) 공고종별 : 일간지 2개사 및 관(시)보 개제</p> <p>2) 소요예산 : 1,219,680원 (26,400원×3단지^{km} ×2사×1.1)</p> <p>3) 지출과목 : 계속지구, 영동토지, 사무관리, 수용비 및 수수료</p> <p>4) 지출방법 : 공고후 청구에 의하여 지출</p>					
제 2 안					
- 공 고 (안) -					
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					
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(기간연기) 연장 공고					
<p>1. 건설부 공고 제6호('68.1.18) 및 제8호('68.1.23) 제77호('71.8.24)로</p> <p>사업시행인가된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중 원지확정처분 미완료된 연포,압구정 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2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</p> <p>의거, 사업계획변경(기간연기) 인가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/p> <p>2. 관계도서를 도시계획국,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</p> <p>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</p>				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align-items: center;"> 1991. 6.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원 본 과 조 </div> 178 </div>					

서울특별시장

0 사업계획변경(기간연기) 내용

지구명	시행면적	시행사	사업 시행 기간		비고
			당초	변경	
영동지구	26,764,872.9 중 5,421,066.6	서울특별시장	'68.1.18- '91.6.30	'68.1.18- '91.12.31	6개월 연장

제 3 안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동 건

1.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변경(기간연기) 인가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게 바람.

첨부 공고문 사본 1부. 끝.

수신처 관제과장, 주택기획과, 강남구, 서초구(도시정비과).

제 4 안

수신 공보관

제목 시보 및 신문 공고 외곽

1.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중인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중 반포,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(사본)과 같이 사업계획변경(기간연기) 인가하였기 2개 일간신문 및 시보게재 이력마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1안 나항(1-4) 허가시행

원본
내조
179

제 5 안
수신 총무처장관
참조 법무담당관
제목 관보 게재 의뢰
1.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변경 인가하였거 관보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 공고문 사본 2부. 끝.
제 6 안
수신 건설부장관
참조 도시개발과장
제목 사업계획(기건인가) 인가 보고
1.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변경(기건인가) 인가하였기 보고합니다.
첨부 공고문 사본 1부. 끝.